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9.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장호섭 의원 등 6명(박종길, 박왕규, 박정환, 고명욱, 정순옥)
- 발의일자: 2025. 9. 3.
- 회부일자: 2025. 9. 3.
- 검토기간: 2025. 9. 4. ~ 9. 10.

2. 제안이유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스쿨존으로 관리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설함 (안 제5조제6호)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9. 3. ~ 9. 15.):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부합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통학로 환경 개선이 미흡한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초·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u></p>

【 관계 법령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